
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포상계획 공고

2015. 3

중 소 기 업 청
생산혁신정책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84호

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포상계획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②항 및 싱글PPM품질
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8호, 2015. 1. 27) 제25조에
의거 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포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9.

붙임 : 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포상요령 1부.

중소기업청장

본 포상계획 및 포상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훈법 및 관련법령, 행정자치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포상관련 규정 준용

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포상계획 (요약)

구 분	싱글PPM상	우수 모기업상	품질혁신 유공자
목 적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을 통하여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을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	협력중소기업의 품질 및 경영혁신 등의 각종 지원시책을 전개한 우수 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을 선정포상함으로써 품질혁신 운동의 확산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을 통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과 품질혁신 운동 확산 및 지속 전개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대통령표창	- 산업훈포장 -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청자격	품질혁신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공고일 현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으로서 수공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	협력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한 대기업 중견기업으로서 수공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	품질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관련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품질경영 성과 창출 및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모범경영인 부문 - 모범관리자 및 사원부문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경영실태 조사표 1부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현황설명서 및 품질혁신 추진사례집 5부 ⑥ [①②③④⑤]항목의 내용이 담긴 CD 또는 USB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현황설명서 및 협력기업 지원사례집 5부 ⑤ [①②③④]항목의 내용이 담긴 CD 또는 USB	① 공적조서 1부 ② 공적요약서 1부 ③ 공적약술서 1부 ④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⑤ 공적내용 증빙자료 1부 ⑥ 이력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1부 ⑧ 경영실태 조사표 1부 (모범경영인 부문에 한함) ⑨ [①②③⑤⑥⑦⑧] 항목의 내용이 담긴 CD 또는 USB
심사방법	서류 및 현지심사		
신청서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한 세부요령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기관에 신청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http://sppm.korcham.net		
신청기간	2015. 3. 9(월) ~ 2015. 3. 31(화)		
접수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전화 : 02-6050-3851)		
포상일자	제21회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2015년 10월 23일 예정)		

□ 포상기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의 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금지 등'기준 준수

(1) 수공 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 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3)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상훈법'제5조 또는 '정부표창기준'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6)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7)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3) 다만, 상기 1)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1)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2)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1), 2)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채불사업주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

2)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채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채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채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채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